법정의 애국가

홍 성 우

*홍성우님은 1974년 민청학련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이래 80년대 전두환 정권에 이르기까지 이땅의 양심범들을 위해 애써온 인권변호사이다.

내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 개업을 한 때가 1971년 10월이었고, 그 뒤 약 3년 동안 나는 아무 다른 생각없이 돈버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러던 1974년 4월, 이른바 대통령긴급조치 1,4호가 선포되고 학생들 수백 명이 당국에 구속되는 민청학련사건이 발생하면서 우연히 내가 그 사건의 변호인이 되었고, 그 때부터 나의 변호사로서의 운명은 크게 변하게 되었다.

이른바 인권변호사라는 고달픈 가시밭길로 나도 모르게 접어들게 되었고, 이후 30년 세월을 숙명처럼 그 길을 걸어 왔다.

그런 의미에서 민청학련사건의 의미는 나에게 특히 각별할 수밖에 없다. 그 무덥던 1974년의 한여름, 사무실의 일반 민 · 형사사건은 내팽개친 채 30여 명이나 되는 학생들 접견다니랴, 하루 이틀걸이로 강행군을 하는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하랴, 그렇게 정신없이 한여름을 그 사건에 매달려 지내면서 그때까지 안일(安逸)한 일상 속에 빠져 잠자고 있던 내 의식이 급격하게 눈뜨게 되었다.

그렇게 30여년 세월을 지나오면서 오늘날의 이 모습으로 내가 있게 된 것인 바, 바로 그런 계기가 된 결정적인 사건이 민청학련사건이니, 내가 어찌 그 사건을 잊을 수가 있겠는가!

민청학련사건의 항소심(비상고등군법회의)의 최종 변론을 하던 날, 용산 삼각지에 있던 군법회의 법정에서 해괴한 일이 일어났다. 나는 그때 내가 목격하고 경험한 사실을 그 몇달 뒤인 월간 『신동아』 1975년 1월호에 글을 쓸 기회가 있어 「법정의 애국가」라는 수필로 올린 일이 있다.

당시 서슬퍼런 긴급조치하였지만, 노도처럼 일어나는 민주회복운동의 열기를 타고 어떻게 이런 글도 나올 수가 있었다. 지금 읽어보면 다소 진부하지만.

이제 와서 내가 민청학련사건을 회상하는 마당에 장황하게 여러 이야기들을 중언부언 늘어놓는 것보다 그 때의 글을 그대로 옮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하여 빛바랜 잡지를 들추어 보았다. 아래의 글이 그 전문이다.

유명한 제퍼슨의 미국독립선언문 중에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가 있다면 국민은 언제라도 그 정부를 고치거나 폐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부를 세울 수 있다"라는 구절이 있다.

일전에 어느 모임에 나가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기회에 이 구절을 인용하고, 오늘날 인권이 어느 나라보다도 잘 보장되어 있다는 영국의 경우, 영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소중한 인권은 실로 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전제적인 절대군주를 상대로 싸워서 얻은 영국민의 피의 전리품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더니, 뒷날 몇몇 친지들이 그렇게 과격한 말을 해도 괜찮겠느냐는 투로 걱정해 주는 이야기를 들었다.

괴이한 일이다. 저 민주 선진국이라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인용하는 것이, 영국의 인권투쟁사를 논하는 것이 어째서 과격한 이야기로 들리는 것인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가 가장 위험한 이야기로 들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 버렸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경외에서 출발하여 정치범에 대한 사면, 사형제도의 폐지와 고문의 근절 등을 주장하는 엠네스티 운동을 10여년 전 영국의 한 변호사가 발족시킨 이래 오늘날 범세계적 운동으로 확대되어 국제연합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고, 1974년도 노벨평화상이 엠네스티 인터내셔날의 의장인 션 맥브라이드에게 주어지기도 하여 인권운동기구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

그 목적이 말해주듯 어디까지나 인간에 대한 깊은 사랑이 근본 정신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퍽이나 소망스럽고 보람있는 운동임에 틀

림없는데, 이런 운동이 왜 그런지 우리 사회에서는 아슬아슬한 운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퍽이나 이해심이 깊은 분들까지도 취지에 십분 찬동은 하면서도 실제로 가담하기를 꺼려한다.

지난번 엠네스티 한국지부에서 자선 바자를 열어 그 수익금으로 무의탁 수감자들에게 들여 보낼 겨울 내복과 책을 마련하여 각 교도소에 전달하였더니, 엠네스티가 정치범의 사면운동을 하는 단체라는 점을 꺼려서인지, 아니면 또 누가 입김을 불어 넣어서였는지 몇몇 교도소에서는 그 물품을 아예 받을 수 없노라는 이야기가 전해왔다.

도대체 엠네스티같은 단체가 무슨 불온한 반국가 단체라도 되는 것처럼 꺼리는 사회분위기는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인가. 선의를 선의대로 받아들일 줄 모르고 정당한 일을 하는 사람을 이단시하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며칠전 어린 딸애가 다니는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을 꼭 나오라고 해서 가보았다. 어린 꼬마들이 노래며 유희며 재롱을 하던 중 혀도 잘 돌아가지 않는 앙징스러운 목소리로 애국가를 부르는 순서가 있었는데, 부모들이 그저 앉은 채로 싱글거리며 듣고 있자 유치원 원장이 조용히 부모들에게 다가와서 "기립해 주시지요" 하는 바람에 그제서야들 깨닫고 겸연쩍게 일어서서 부동자세를 취하고 꼬마들의 애국가를 들은 적이 있다.

학교의 교정이나 군대의 병영 안에서는 물론이고 영화관에를 가도 본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애국가가 연주될 때는 모두가 기립하여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국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한다.

때와 장소를 막론하고 애국가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예의임에 틀림없다면, 누가 어디서이건 순수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르는 이상 이를 경청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터인데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를 보았다.

1974년 9월 28일, 육군본부내 비상고등군법회의 법정에서 소위 민청학련사건에 관련된 30여 명의 학생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리게 되었는데, 군법회의 심판부가 입정하여 재판장이 개정선언을 하자 기립해 있던 학생들이 일제히 비장한 음성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이…"하며 애국가를 봉창하기 시작하였다.

학생들의 애국가 봉창이 시작되자 돌연 해괴한 사건이 일어났다. 옆에서 계호하고 있던 교도관들이 아우성을 치며 손으로 학생들의 입을 틀어막기 시작한 것이다. 애국가를 하는 학생들과, 그 입을 틀어막는 교도관들의 손과 닥치라는 아우성—.

손으로 막고 밀치고 소리치는 통에 법정은 수라장이 되고 손을 피해 가며 학생들이 애국가를 계속하자 재판장은 학생들 전원을 퇴정시킬 것을 명령했다.

그 뒤 정작 재판을 받아야 할 학생들은 모두 퇴정당하고, 방청하던 학생 가족들과 신문기자들마저 모두 퇴정당한 가운데 휑하니 빈 법정에서 7인의 심판관과 2인의 검사, 군법회의 직원이거나 수사기관원인 듯한 방청인 10여 명과 사방을 빙 둘러싼 헌병들, 그리고 피고인인 학생들 대신 변호인인 필자 한 사람만 변호인석에 덩그러니 앉혀 놓은 채 모두 합산한다면 백 수십년은 됨직한 징역형이 선고되었다.

납덩이에 눌린 것처럼 마음이 무겁고 서글프다. 다른 노래도 아닌 애국가를 하는데 그 입을 왜 국가공무원이 막아야 하는가.

비록 학생들이 애국가를 부른 동기는 그들이 원하는 일체의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심판부가 받아들이지 아니한 일방적인 재판 진행에 대한 항의의 뜻이었거나, 아니면 그들의 행위동기가 순수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출발한 것임을 밝히려는 뜻이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어느 경우이건 과연 그들의 애국가 봉창을 기립하여 경청하지는 못할망정 아우성을 치며 입을 틀어 막았어야 하는가.

두 손은 모두 수갑으로 묶여 있어 난동을 부릴 수도 없는 학생들인데, 아무리 재판 진행에 지장이 있었더라도 일단 애국가가 끝난 다음 법정질서를 유지해 주도록 주의시킬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유치원 꼬마들이 불러도 기립해서 들어야 하는 우리의 애국가를 왜 손으로 입까지 틀어막아가며 제지해야 하는가. 참으로 나라의 노래인 애국가를 하는 것조차 난동으로 취급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 버린 것인가.

어떤 학생이었던가. 최후진술에서 "이 부조리하고 불의가 판치는 사회에는 나의 설 땅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이 참으로 행복합니다"하며 말끝을 맺지 못하던 것이 생각난다.

어린 학생의 그 애잔한 목소리, 그 맑은 눈망울이 지금도 무언가 뜨거운 물줄기가 되어 필자의 가슴 한 구석을 적셔주고 있다. 지금도 그 어린 학생은 불기 하나 없는 차디찬 감방 안에서 육체의 고통을 혀를 물고 참아가며, 그가 원하는 밝고 옳은 사회가 이룩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리라.